

## 계절학기 운영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학칙 제6조 따른 계절학기 실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계절학기 실시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점 미취득자의 학점취득기회 부여로 학점을 보완한다.
2. 성적부진자의 성적 개수 기회부여와 학문성 고취
3. 학문의 집중 연구와 이수영역 확대
4. 교양 및 전문지식 습득 기회로 자기 발전을 도모한다.
5. 수업결손 및 학기간 균형을 유지한다.

**제2조 (개설과목)** 교양과목 및 기타 교과목을 개설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과목을 총장이 정할 수 있다.

**제3조 (수강최소인원)** 과목수강인원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. 단 9명 이하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.

**제4조 (개설시기 및 시간)** 동·하계 방학기간 동안 실시하며 3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교과목의 총 강의시간은 학기 매주 정규강의 시수에 15주를 곱한 시간으로 한다.

**제5조 (강사선정)** 강사는 본교 전임교원을 우선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외래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**제6조 (강의료)** 강의료 산정은 본교 전임교원은 초과강의료를 외래강사는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 한다.

**제7조 (수강신청)** 통상 학기 수강신청 규정에 준하며 수강신청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. (단, 폐강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.)

**제8조 (등록)** 수강신청한 학생은 소정기간 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.

**제9조 (학점인정)** 개설과목을 수강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그 과목학점을 인정한다.

**제10조 (시험)** 시험은 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과목별로 실시한다.

**제11조 (이수단위 및 학점이수)**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이수학점은 6학점 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**제12조 (성적처리)** 계절학기 이수성적은 정규학기의 성적평점에 삼입하여 학점으로만 인정한다.

**제13조 (등록금)** 계절학기 등록금은 별도로 정한다.

### 부 칙

1. 본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본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본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